

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자 1 호 증권신고서 등 변경내역

■ 변경사유: 수익자에 대한 과세 중 세제혜택 문구 추가에 따른 변경등록

■ 변경내역

구 분	현 행	개 정 (안)
증권신고서 및 (예비)투자 설명서)	P.24 3)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* 세제혜택 : 납입액의 40% 공제(연 240 만원 한도) <u>다만, 10 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.양도하거나 원금.이자.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.</u>	P.24 3)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* 세제혜택 : -----(좌 동)----- <u>(연 240 만원 한도,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%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)</u> ----- (좌 동)----- ----- (좌 동)-----
(예비)간이 설명서	P.9 [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 * 세제혜택 : 납입액의 40% 공제(연 240 만원 한도) <u>다만, 10 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.양도하거나 원금.이자.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.</u>	P.9 [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 * 세제혜택 : -----(좌 동)----- <u>(연 240 만원 한도,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%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)</u> ----- (좌 동)----- ----- (좌 동)-----

■ 시행일: 2015 년 1 월 29 일